

##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90호 1999. 5. 1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 및 동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8호)이 개정되어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 조제·공급의 신고의무, 감정평가사 시험합격자의 실무수습 종료시와 감정평가사사무소 폐쇄시의 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무수습종료신고등)”을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실무수습종료신고서”를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 사항변경신고서 및 감정평가사사무소폐쇄신고서”를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 및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제2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감정평가업협회설립인가신청서”를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부상 지목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분석의 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부상 지목	
--------	--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제목 “실무수습종료신고서”를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신고합니다.”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합니다.”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하며, 동서식 뒷면중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각각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0호서식 뒷면의 경유기관란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각각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각각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뒷면의 경유기관란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각각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동면의 처리

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각각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 2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감정평가업협회 인가신청서”를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